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우리마을 돌봄센터(노인주간보호센터)
전담인력 1차채용 연장공고 및 일정변경**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우리마을돌봄센터(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차채용 연장공고 및 일정을 변경하오니, 기존 응시자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장공고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2023년 3월 14일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가. 채용계획

채용분야	모집인원	계약기간	비고
센터장	1명	근로계약 체결일 ~ 2023.12.31. (계약기간 종료 후 시험사업 운영기간에 따라 재계약 가능)	접수마감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		
조리원	1명		연장공고진행
요양보호사	2명		

2. 근무 조건

구분	보수형태	금액
조리원	월급제	2,314,670원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적용)
요양보호사	월급제	

3. 응시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가. 공통요건(공고일 기준)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단, 시설장과 요양보호사의 경우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자
- 지역 우수인재 보호·육성을 위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었던 기간 (말소 및 거주 불명기간 제외)이 총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구 분	결격사유	비 고
노인주간보호센터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참고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결격사유 등)	

※ 상기조항에 위배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직급별 자격기준(공고일 기준)

- 다음의 각 직급별 자격을 충족하는 자

직 급	응 시 자 격 기 준
조리원	■ 조리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우대사항

구 분	대 상	우대 요건	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면접 각 항목 40% 이상 득점 시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 처장이 발행한 서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		면접 만점의 5%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인근지역 거주자	·인근지역거주자(한경면)(①)		동점자 우대 채용	주민등록 초본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③)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④)			증명서
치매전문 교육	·시설 치매전문교육 수료자(⑤)			수료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 ○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인근지역거주자,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및 치매전문교육 수료자(①→⑤) 순으로 우대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중복 적용 불가)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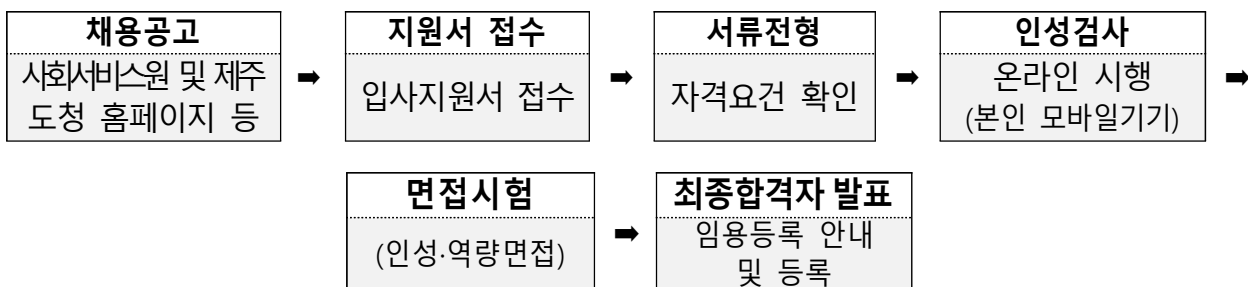
4. 직무내용

구 분	주요업무	공통
조리원	■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식사·간식 준비, 위생관리 및 환경미화 등	주간보호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차량승영지원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등)	

5. 시험단계 및 채용절차

가. 시험단계: 서류전형 → 인성검사(면접 참고자료) → 면접시험

나. 채용절차



- ※ 전(前)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진행시 참고자료로 활용

6. 시험세부내용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가. 채용공고

- 공고기간 : '23. 3. 14.(화)~ 3. 22.(수)
- 공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및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

나.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3. 3. 14.(화)~ 3. 22.(수), 12: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jpcare@jeju.pas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돌봄서비스지원팀
- 응시직위 : 조리원 1명, 영양보호사 1명
 - 제출된 서류는 지원 자격의 적격 여부 및 서류심사를 위해 사용
 - 채용 형식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센터장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이용 동의서,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2. 서류전형

가. 일자/장소 및 시험위원

- 서류전형 : '23. 3. 24.(금)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2층 가치채움실
- 시험위원 : 2명(내부위원)

나. 심사방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응시 자격의 적격여부 결정
 - ※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다. 합격자 결정

평가항목	합격자 결정 기준	비 고
· 응시자격 적격/부적격 여부	· 채용분야 응시자격이 “적격”인자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및 인성·면접시험 대상자 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 3. 24.(금)
- 통지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3. 인성검사

가. 일자 및 장소

- 일 자 : '23. 3. 27.(월)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1층 희망나눔실

나. 대상 및 출제방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출제방법 : 온라인 인성검사(인성검사 종합결과, 응답신뢰도, 조직적합도 항목)
 - 응시자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 활용 온라인 검사진행
 -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나 모바일 기기(2G폰 사용불가)
- 합격자결정 : 응시자 전원 면접시험 기회 부여,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4. 면접시험

가. 일자/장소 및 시험위원

- 일 자 : '23. 3. 27.(월)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1층 온기나눔실
- 면접위원 : 3명(내·외부위원)

나. 심사방법

면접평정요소					배점
①공직책임성 등	②인성 및 직업관	③이해력 및 지식수준	④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⑤창의성 및 전문성	
20	20	20	20	20	100

※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7. 채용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3. 3. 14.(화) ~ 3. 22.(수)	내·외부홈페이지 공고
지원서접수	'23. 3. 14.(화) ~ 3. 22.(수), 1200까지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3. 3. 24.(금)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안내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23. 3. 27.(월)	
최종합격자발표	'23. 3. 27.(월) 예정	
임용등록기간	'23. 3. 27.(월) ~ 3. 29.(수), 17:00	
임용일	'23. 4. 1.(토) 예정	※ 설치준비를 위해 임용예정일 보다 먼저 계약할 수 있음

※ 상기일정은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단계별 일정 공고 시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8.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응시자 공통	응시원서	[서식1] 필수제출
	자기소개서	[서식2] 필수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필수제출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필수제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미인정)	필수제출 (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 기재, 개명·병역사항 포함)
	재직/경력증명서	해당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가산점 확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해당자(가산점 확인)
	1. 사회적 취업취약계층 증명서 2. 시설 치매전문 교육 수료증(요양보호사) 3. 인근지역거주자(한경면)	해당자(우대사항 확인)
최종 합격자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채용신체검사서 (일반채용 신체검사서-감염성질환 및 정신질환검사를 포함하거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준용가능) 4. 보건증 5. 주민등록 등본(13자리 모두 표시) 6.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관내 경찰서 발급) 7.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관내경찰서 발급) 8.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부(3*4cm) 9.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기타 서류는 별도 안내	

※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 경력증명서 외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실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9.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3. 3. 14.(화)~ 3. 22.(수), 12: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jpcare@jeju.pass.or.kr)

(※ 방문접수는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돌봄서비스지원팀

○ 문의전화 : 070-8805-4998(돌봄서비스지원팀)

10. 최종합격자 결정 및 통지

가.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구분	면접 평정요소	합격자 결정 기준
공통 사항	①공적책무성, 주간보호센터의 목적성 부합여부 ②이해력 및 지식수준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인성 및 직업관 ⑤창의성 및 전문성	·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동점자 처리】 - 1순위: 인근지역거주자 - 2순위: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 3순위: 시설 치매전문교육 수료자 (①→⑤순으로우대) - 4순위: 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 (①→②→③→④→⑤) ※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나. 최종 합격자 통지

- 합격자 발표 : '23. 3. 27.(월) 예정
- 통지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채용 임용예정일 : '23. 4. 1.(토) 예정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과 고용계약 체결
- ※ 입소자모집 추이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 설치준비를 위해 임용예정일 보다 먼저 계약할 수 있음

11.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안내

가.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예비합격자는 비공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9조(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① 원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 ②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나.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순번(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다.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접수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방법 : “채용결과 이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돌봄서비스지원팀으로 제출
 -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답변 처리
-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라. 채용서류 반환

- 운영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방법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돌봄서비스지원팀으로 제출
- 반환방법 : 입사지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비용은 기관부담)

12. 기타사항

-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사회서비스원·제주도청 홈페이지등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나.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채용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가림 처리됩니다.

- 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바.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가점 확인 및 자격 확인용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사.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최종 합격자의 근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임용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자. 임용 예정일 이후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차.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카.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타. 지원자격 요건 심사 및 급여 반영을 위한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서류 적부심사 시 결정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불인정 합니다.
- 파.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돌봄서비스지원팀 (070-8805-49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에서는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